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평등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2025.11.18.화.
오후 2~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오후 2시~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안내] 진행순서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라운드테이블 :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14:00~14:05 (5분)	시민개헌넷 소개 및 라운드테이블 취지 안내	
14:05~14:10 (5분)	[인사말] 이지현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참여연대 사무처장)	
14:10~15:10(60분) 각 15분	[발제1] 성소수자인권운동 -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02
	[발제2] 청소년인권운동 -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06
	[발제3] 이주인권운동 - 임선영 (이주인권 셋 대표)	09
	[발제4] 장애인권운동 - 초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12
15:10~15:55 (45분)	참여자 종합토론	
15:55~16:00 (5분)	마무리 및 향후 활동계획 안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된지 4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 1987년 개헌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기본권을 강화하였고, 현행 헌법 하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성과들이 있었음. 최근 성소수자의 기본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대법원 2022도15950 판결) ▲ 트랜스젠더가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된 기본권으로 본 결정(대법원 2020스616 결정) ▲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위반이라 본 판결(대법원 2023두36800 판결)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일부 진전들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의 헌법 개정은 모두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을 상정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이 헌법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볼 수 있음. 가령 최근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가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등록되자 보수개신교 단체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를 헌법 위반이라며 주장하는 일이 있었음.¹ 물론 헌법에는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하는 조항이지 혼인을 이성 간의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없음. 그럼에도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하는 조그마한 변화에도 헌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헌법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더 이상의 의미없는 논란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무엇보다 40여년만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가치를 담고,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헌법이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임. 지난 겨울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외치며 광장에서 선

¹ 프레시안, [“국민의힘, ‘동성 배우자’ 인구총조사에 또 시비… “한국사회 윤리 파기”](#)”, 2025. 11. 13.

시민들이 가장 바랐던 세상이 바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었음.²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소수자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어야 함. 이러한 취지와 방향을 담아 무지개행동은 2018년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서 개헌을 촉구했음. 이 때의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기에 해당 의견서의 요약본을 다시 제시하고자 함.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본 (2018. 2. 22.)

1. 2018년 개헌의 가치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2018년 개헌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30년 동안 발전해 온 인권을 내용을 담아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평등권 강화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이며,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평등권 조항 입법의 추세입니다. 외국의 주요 국가들 역시 모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보편적인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면서, OECD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을 헌법 또는 법률(포괄적 차별금지법, 노동법, 형법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신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명시, 특히 스스로 규정한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격의 일부이며, 자기 결정, 존엄성, 자유의 가장 기본입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²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舊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천만의 연결 결과 리포트〉](#), 2025.

성별정정의 엄격한 요건 때문에 법적 신분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숨기거나, 억제하거나, 부인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합당한 법적 권한을 갖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4.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신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누구든지 불임수술 등 의료적 또는 심리적 시술이나 검진을 강제당하거나 의료시설 등에 감금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항을 추가하여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트랜스젠더/인터섹스 성별정정제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방지하여야 합니다.

5.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신설

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 혐오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6. 성평등 조항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실제 존재하는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의 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7. ‘아동의 권리’ 강화

인터섹스(Intersex)아동이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동의 없이 신체 훼손하는 수술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남용행위로부터 인터섹스(Intersex)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8.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신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법절차에서의 구금뿐만 아니라 행정영역에서의 구금과 사인에 의한 구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외국인보호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포함하는 구금시설을 신설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현행 제36조 제1항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수정하고, ‘모든 사람은 혼인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독점적 특혜’를 예방하고 비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해야 합니다.

10. 재생산권 신설

현행 제36조 제2항 모성 보호 조항은 재생산권을 포괄하기에 협소하므로 ‘모든 사람은 성적자기결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11. ‘국민국가’의 극복 등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하고,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권리, 군사법원 폐지, 정보기본권,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에 대한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기본소득, 건강권, 환경권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개헌과 성소수자 인권

헌법의 개정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떨어질 수 없는 이슈입니다. 개헌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헌법의 제정이나 개헌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한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국내외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규범이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개헌이 되어야, 모두를 위한 개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개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청소년인권의 ‘평등헌법’을 말하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1. 왜 청소년의 관점에서 '평등한 헌법'이 필요한가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을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청소년은 헌법적 평등의 주변부에 놓여 있는 집단이다. 청소년은 국민이지만, 정치적 참여와 공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넓게 배제되고 있고, 교육·노동·복지·사법 등 여러 영역에서 '미성숙·보호 대상'이라는 명목 아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분명한 시민 주체로 광장에 섰지만, 청소년만은 새 헌법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나 자신을 대의할 선출직 정치인을 뽑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조차 청소년이 배제되는 구조 자체가, 현행 헌법의 한계인 것이다.

2. 2018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개헌대응 경과

2018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청연)는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아래와 같이 개헌 요구를 공식 제출한 바 있다.

1) 개헌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보장

- 국민투표권을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한정된 헌법 제130조 구조는 청소년을 배제한다. 선거연령·국민투표 연령이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은 헌법 개정 과정 전체에서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다.

2)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은 시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국가는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3)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의 헌법 규정 삭제

- 군사독재 시기 도입된 만 40세 규정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법률로 정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개정

-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청소년의 정치교육·정치 표현을 막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5) 아동·청소년 기본권 조항 신설

- UN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원칙(차별금지·최선의 이익·생존·참여)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6) 평등권 차별금지사유에 '연령' 포함

- 청소년의 권리 제한의 핵심 사유는 '나이'이다.
- 평등권 조항에 연령을 포함해야 헌법이 현실의 차별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

7) 교육권의 인권적 재구성

- 교육의 목적을 인권·민주주의·인격 발달로 재정의하고, 학생의 인권 보장과 무상교육 확대 등 국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3. 평등권 개헌을 바라보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요 문제의식

1) 나이주의(Ageism)와 헌법의 공백

헌법은 연령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청소년은 언제나 예외와 제한의 대상이 된다. 평등권 조항에 연령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청소년 공동체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기반이다.

2) 과도한 보호주의의 문제

현행 헌법에서 아동·청소년은 거의 항상 '보호받는 존재'로만 등장한다. 하지만 인권은 보호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참여와 자기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3) 민주주의로부터의 구조적 배제

선거연령·국민투표 연령 제한은 청소년을 사실상 헌법 공동체 밖에 두는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4. 추후 개헌에서 필요한 네 가지 원칙

1) 평등권 조항에 '연령' 명시하기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권리를 강화하는 변화이다.

2) 아동·청소년 기본권 조항 신설

차별금지, 최선의 이익, 생존·발달, 참여의 원칙을 헌법이 직접 제시해야 한다.

3) 참정권 확대의 헌법적 의무화

- 선거권·국민투표권의 연령 하향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의 헌법 규정 삭제
- 정치 표현·정치 참여의 자유 보장

4) 교육권의 재구성·학생인권 보장 명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 그리고 학생의 인권 보장을 헌법에 쓰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청소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시민이다

평등헌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청소년은 가장 나중에 아니라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집단이다.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 중심에서 평등·참여·시민성의 언어로 다시 써내는 것이 이번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주인권운동 관점에서

임선영 (이주인권 셋 대표)

1. 들어가며 : 제10차 헌법개정안(2018. 3. 22.)

- 기본권의 주체 확대 : 세계화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각각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평등권 강화 : 사회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함.

2. 이주 관련 쟁점

1) [쟁점1]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보장 여부

- 대한민국 헌법(전부개정, 1987. 10. 29.)은 제10조부터 시작되는 기본권 조항들 모두 문언 상 권리들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고 있음.
 -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헌법 자체가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국제법·조약에 위임하는 형태임.
 - 이로 인해 외국인의 권리는 국제조약 또는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만 구체화될 수 있으며,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조약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적용근거가 부재하게 됨.
- 그동안 외국인이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 인정되는지, 외국인이 내국인과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대해 헌법학계의 통설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 기준이 되어왔음.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보편성이 인정될 경우, 즉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 기본적 인권은 이를 ‘인간의 권리’로 이해하여 ‘외국인’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 다만 그 범위는 입법부 재량(입법형성권)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봄.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인간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설시³한 바 있고, 특히 헌법 제10조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무슨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음.
-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함
-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사회보장, 교육 지원, 공공서비스 등은 국적, 체류자격에 따라 차등 가능하다고 판단·적용되고 있으며, 정치적 권리(선거권, 피선거권)는 헌법상 당연히 국민에게만 인정되고 있음.
 -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에 대해, 202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함.

“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은 특히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목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제한적 적용에 대해 우려한다.”

2) [쟁점2] 평등권과 차별사유에 ‘인종 등’ 명시 여부

- 국제인권조약(CERD, ICCPR, ICESCR, ICRMW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평등권에서 국적·인종·피부색·출신민족·언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차별사유를 명시할 것을 권고해옴.
- 헌법 또는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으로 포함되어야 사법적 심사 기준이 명확해지는 등 실효성이 강화되고, 외국인 혐오 등 사회적 낙인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

³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헌법재판소는 이 외에도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 ‘인간의 권리’로 인정한 바 있다.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등 참조.

3) [쟁점3] 헌법 제6조 제1항과 실질적 기준으로서 괴리 존재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사법실무에서 조약 등이 거의 원용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202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였음.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이 적절하게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나, 실제로는 협약이 사법절차에서 거의 원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 2025년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 현재 진행중)에 따르면, 국내 법원의 판결문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처음으로 원용된 1992년 7월 16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선고된 모든 판결문에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판결문은 총 3,185건임.
 - 이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8조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이 3,065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⁴ 가장 적게 원용된 협약이 인종차별철폐협약으로 3건의 판결(민사 2건, 행정 1건)에 그침.
- 반면, 독일·프랑스 등은 헌법에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가 누적되어 조약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본권 해석 시 국제법을 고려할 헌법상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⁴ 이혜영,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94-95쪽.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초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1. ‘국민주권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부정되는 장애인의 권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일어난 계엄 이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쳐왔다. 이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임을 뜻함과 동시에, 비-시민으로 몰려나있던 장애인도 이제는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자는 선언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칭하는 현 정부 역시 장애인권리입법과 권리에산에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4년간 외쳐온 이동권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해결을 약속해왔지만, 예산 보장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의제인 탈시설은 여전히 복지부의 적극적 반대 속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등 입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논의는 장애인의 존재와 권리를 선명하게 헌법 질서 속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2. 권리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선언의 필요성



2025년 8월 28일 오전 11시(프랑스 현지 시간)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이 루브르박물관에서 진행한 ‘다이인(die-in) 행동’

프랑스 혁명 이후 제정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왕정이 행사한 ‘권리의 약탈’에 맞서 민중이 스스로 권리를 구성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선언에서조차 여성은 배제되었고, 올랭프 드 구즈는 이에 맞서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을 작성했다. 이와 유사하게,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도 장애인의 존재는 없다. 장애인은 제34조 제5항에서 단 한 번, 그것도 ‘신체장애자’라는 구시대적 표현과 함께 보호의 대상으로만 등장한다. 이제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장애인과 장애시민의 권리 선언’을 헌법 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3. 현행 헌법의 구조적 문제: 능력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의 고착

현행 헌법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 능력주의(ableism)에 기반한 조항들을 다수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장애 문제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문제로 축소하고, 차별의 역사와 사회적 책임을 가리는 역할을 해 왔다.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는 비용·효율의 논리 속에서 축소되고, 국가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었다.

전장연은 2005년 출범 이래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다. 최종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는 비장애중심주의, 능력주의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

4. 역사에서 반복되는 비용 중심 논리의 문제

1939년 독일 나치가 실행한 T4 프로그램은 우생학과 비용 논리에 기반해 30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하고 강제 단종시술을 자행한 범죄였다.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네 명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는 비용과 효율로 생명을 재단했다. 이 논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2023년에 이야기했다. 전장연은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잊지 않고, 비용 논리로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정책에 맞서 투쟁한다.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장애등급제 또한 권리를 예산 총량 문제로 환원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정부가 2019년 시행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실제로는 종합조사표를 도입하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막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을 제한해 왔다.

5. 시설화의 구조: 근대국가가 만든 내부 식민지

근대 복지체제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정상적·비생산적 존재’로 규정하고 시설에 수용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시설은 돌봄이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의 일상을 통제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적 인권침해의 공간이었다.

‘좋은 시설’은 원천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며, 탈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의제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도 시설에서 살아가지 않는 탈시설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6. 헌법 개정의 핵심 과제 - 장애인 기본권의 명시와 능력주의의 해체

현행 헌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위치시켜 왔으며, 이는 시설화·차별·배제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따라서 개헌은 단순한 문구의 수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시민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확립이어야 한다.

- 제10조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추가
- 제11조 1항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 추가 및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구제조치 의무 부과
-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집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 부과, 장애를 고려한 의사조력을 받을 권리 신설
- 제31조 ‘능력에 따라’ 삭제
- 제32조 장애인 노동권 신설
- 제34조 5항 ‘신체장애자’ 표현 삭제 및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독자조항’ 신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자만이 가장 급진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장애인중의 힘과 연대투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가능하게 할 헌법 개정은, 단지 장애계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평등한 삶을 위한 민주주의의 확장이다.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톡 채널 @equalityact